

성주군 침외생태학습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성주참외를 테마로 휴양, 교육 및 체험기반시설 재조성에 따른 공원 운영 및 관리 기본사항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농촌여가 및 체험,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교류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명칭 변경 :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
→ 성주참외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
- 나. 공원의 목적, 기능에 관한 사항
- 다. 공원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라. 공원 대관 및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제3항, 「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입법예고 : 2022. 10. 25. ~ 2022. 11. 15.(21일간)

- 규제심사 : 심사 대상 아님[미래지역활력과-906(2022. 02. 17.)]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[가족지원과-7728(2022. 02. 17.)]
- 비용추계서 : 별도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성주참외공원이 변경 조성됨에 따라 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공원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
-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명칭의 변경, 업무 내용, 개관 및 휴관, 관람 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.
-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성주참외공원의 변경 조성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성주참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